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월 15일 부천시의회의회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 1월 21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의원)

□ 제안이유

-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분리수거 용기 및 집하장(이하 “쓰레기 집하장”）」이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위생 관리도 어려운 실정임.
- “쓰레기집하장”에 비가리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타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로 규정 단지 내 미관 및 효율적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 우리 시 주거형태를 대변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존의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집하장 비가리개시설”을 추가함. (안 제19조[별표2] 추가)
- 단, 무계획하고 부분별한 설치 예방차원의 시설기준을 마련 고시토록 함.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면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비가림시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 대해 중점을 두었으며 차량 통로를 확보해 쓰레기 수거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 음식물쓰레기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고 수거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악취예방을 위한 통풍시설 및 기계식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 비가림시설 설치시 건축법 등 각종 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비가림시설은 가설건축물 신고로 하고 각종 법령에 위배되면 설치 할 수 없음.
○ 앞으로는 건축허가시 쓰레기 수거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있는지?	○ 향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덧붙임 1.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천시 건축조례 제19조 제2항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 정 안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19조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화 원	알미늄샷시	50제곱미터 이하	
관리사무실	알미늄샷시	3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천막·파이프	300제곱미터 이하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저장시설	천막·파이프 또는 샷시	300제곱미터 이하	공장부지 내
차양시설· 비가림개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 <u>사업승인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집하장 비가림시설」 단 세부 시설기준은 별도 고시에 의함</u>

※ 공통사항

1. 경계선부근의 건축인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를 적용한다.
2. 존치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3.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시장이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컨테이너 구조로 할 수 있으나,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19조 관련)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19조 관련)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19조 관련)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화 원	알미늄샷시	50제곱미터 이하		화 원	알미늄샷시	50제곱미터 이하		화 원	알미늄샷시	50제곱미터 이하	
관리사무실	알미늄샷시	30제곱미터 이하		관리사무실	알미늄샷시	30제곱미터 이하		관리사무실	알미늄샷시	3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천막·파이프	3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천막·파이프	3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천막·파이프	300제곱미터 이하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저장시설	천막·파이프 또는 샷시	300제곱미터 이하	공장부지 내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저장시설	천막·파이프 또는 샷시	300제곱미터 이하	공장부지 내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저장시설	천막·파이프 또는 샷시	300제곱미터 이하	공장부지 내
차양시설· 비가림개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차양시설· 비가림개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 <u>사업승인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집하장 비가림개시설」 단, 세부시설기준은 별도 고시에 의함</u>	차양시설· 비가림개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 <u>사업승인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집하장 비가림개시설」 단, 세부시설기준은 별도 고시에 의함</u>
<p>※ 공통사항</p> <p>1. 경계선부근의 건축인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를 적용한다.</p> <p>2. 존치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p> <p>3.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시장이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콘테이너 구조로 할 수 있으나,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p>				<p>※ 공통사항</p> <p>1. 경계선부근의 건축인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를 적용한다.</p> <p>2. 존치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p> <p>3.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시장이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콘테이너 구조로 할 수 있으나,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p>				<p>※ 공통사항</p> <p>1. 경계선부근의 건축인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를 적용한다.</p> <p>2. 존치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p> <p>3.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시장이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콘테이너 구조로 할 수 있으나,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p>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66호
의결 년월일	2009. 1. 22. (제149회)

제안년월일 : 2009. 1. 21.

제안자 : 건설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에서 틀리게 사용한 용어를 현행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함.

2. 주요골자

- ‘쓰레기집하장 비가리게시설’을 ‘쓰레기집하장 비가림시설’로 수정하고자함(안 제19조제2항별표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9조제2항별표2) ‘ 사업승인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집하장 비가리개시설」 단, 세부 시설기준은 별도 고시에 의함 ’를 ‘사업승인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집하장 비가림시설」 단, 세부 시설기준은 별도 고시에 의함’로 수정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 사업승인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집하장 <u>비가리개시설</u> 」 단, 세부시설기준은 별도 고시에 의함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 사업승인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집하장 <u>비가림시설</u> 」 단, 세부시설기준은 별도 고시에 의함

[수정안 포함]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19조 관련)

용도	구조	면적	기타
화원	알미늄샷시	50제곱미터 이하	
관리사무실	알미늄샷시	3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천막·파이프	300제곱미터 이하	
폐기물저장시설 공해배출저장시설	천막·파이프 또는 샷시	300제곱미터 이하	공장부지 내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인정시장” 안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사업승인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집하장 비가림시설 단, 세부시설기준은 별도 고시에 의함

※ 공통사항

1. 경계선부근의 건축인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를 적용한다.
2. 존치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3. 가설건축물의 구조는 시장이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콘테이너 구조로 할 수 있으나, 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